

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(소병훈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노후준비서비스의 정의를 노후준비를 위하여 신체적·정신적·사회적·경제적 등 모든 영역을 포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구체화하고, 지원계획의 수립에도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노후준비서비스 정의를 반영하도록 함(안 제2조 및 제5조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박 동 찬)